

## 세월호 참사 5년... 재난 보도준칙 마련 이후에도 반복되는 문제

송중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는 재난상황에 대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에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었다. 속보 경쟁에 대한 정확한 보도의 원칙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재난 보도에 대한 전문성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가까운 무례한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당시 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다룬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어부징을 통한 상업화, 흥미를 유발하는 과장 보도와 희생양 찾기 묘사를 이용한 극화, 그리고 선정주의적 인간 표적 보도에 가까운 시간과 지면을 허비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기고문이 게재된 바도 있다.<sup>1)</sup>

특히 피해 상황의 구체적 묘사를 위해 취재 기자가 현장을 직접 묘사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방송 진행자의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 피해자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의 마지막 환갑 여행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여섯 살 어린이의 신상을 파헤친 이야기, 희생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

1) 김성재 (2014),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 <민언련 시민 모니터 기고문>. URL: <http://www.civilnet.net/xe/monitor/26763>

는 등 자극적인 사연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2)</sup> 그 중 일부는 허위 사연이기까지도 했다는 점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신랄한 비판과 반성은 재난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4년 9월에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난보도준칙이 제정된 바 있다. 사실 재난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직후에도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포럼 등을 개최해 재난보도준칙(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지만 끝내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이후에도 대형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sup>3)</sup>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 결실을 맺은 재난보도준칙은 재난관련 취재와 보도의 일반준칙, 피해자의 인권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업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난 취재보도의 기준을 담고 있는 일반준칙은 정확한 보도, 피해 최소화, 비윤리적 취재 금지, 무리한 보도경쟁 자제, 선정적 보도 지양 등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준칙 제15조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관련 인물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인터뷰를 강요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취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으로 하고 있다.

재난보도준칙 제정 이후 우리 언론의 재난보도 행태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는 “언론사 기자와 PR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 언론의 재난보도에 대한 태도나 행태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나 재난보도준칙 제정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이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4)</sup>

2016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재난보도 역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고,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KTV의 경우 재난상황을 홈쇼핑 프로그램 포맷을 통

2) 서은아 등 (2017). 재난보도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 연구. <한민족어문학>, 76권, p.201-227.

3) 김시연 (2014, 4, 17). 막 나가는 세월호 보도...재난보도준칙은 없다?.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180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1802)

4) 이재진 (2019, 8, 20).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보도 얼마나 바뀌었나.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7>

해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이라는 선박 소유 회사에 보도의 관심이 쏠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천 화재에서도 건물주에 대한 보도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 바 있다.

2018년 강릉펜션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질식 사망 사고는 피해자가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보도 방향이 원인과 대책 등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개인적 사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일부 언론사 기자는 심지어 해당 학교를 찾아가서 친구가 사고 당했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는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 과도한 질문, 호기심, 동정 유발로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의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2차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sup>5)</sup> 급기야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에 대한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의 개인사까지 노출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족과 지인들에 대한 스케치식 보도를 자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보험금 관련 보도 화면 (관련 기사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32>)



이러한 재난보도 행태는 2019년에도 지속되었다. 올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한국인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언련

5) 정관용 (2018, 12, 19). 강릉 펜션 사고, 취재금지 청원까지? 2차 가해 막으려면. 〈노컷뉴스〉, URL:<https://www.nocutnews.co.kr/news/5078473>

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보험금 최대 금액”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5월 31일 오후 3시까지의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총 209건이었으며, 더욱이 기사 제목에 보험금 액수까지 명시한 기사도 25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의 사망 보험금을 상세히 전한 모 방송사의 보도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 액수를 논하는 것은 희생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의 윤리적 감정도 거스르는 비도덕적 행태라는 지적도 덧붙이고 있다.<sup>6)</sup>

재난관련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의 문제는 전 세계 언론의 보편적인 현상일까? 영국 런던에서 2017년 6월에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화재사건과 관련된 영국 언론의 보도행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화재 사건의 비극을 전하는 영국 언론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신상 노출이 있을 수 있는 불필요한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며 사건 경위와 정치권 공방,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위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신이나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 공개는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며 주로 화재로 불타는 건물을 비추거나 그것을 배경으로 보도하는 식이다.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언론의 재난 보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SNS를 통해 재난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건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인근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이 담긴 가방을 촬영해 인터넷에 5장의 사진을 올렸고, 화재 이후 희생자의 신상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언론사들이 불타는 건물 위주로 보도한 것과 달리 그는 열린 가방 틈으로 보이는 희생자의 얼굴과 몸을 SNS에 노출했다. 결국 그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외설적이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돼 웨스트민스터 법원에서 3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문제가 된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sup>7)</sup>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일본의 재난보도는 ‘피해 중심보도’에서 ‘이재민 중심보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에서 검은 연기로 뒤덮인 시가지 장면, 옆으로 넘어진 고가도로, 도로를 막고 쓰러진 빌딩 등 피해 현장의 극적인 장면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던 것이 피해자와 이재민의 두려움을 자극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정작 이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정보공백이라는 2차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학습을 하게 됐다. 이에 가족의 생존 여부를 신청 받아 알려주는 ‘안부방송’이 더욱 강화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시청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컸던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이를 뒤에도

6) 최영주 (2019, 6, 3).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강조하는 언론.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32>

7) 김지현 (2017). 런던 화재 참사로 본 영국 언론의 재난 보도. <신문과 방송>, 7월호.

규모 4.5의 여진이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언론이 경주 지역이 폐허가 된 것처럼 보도하여 이재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것과 대비되는 행태다.<sup>8)</sup>

우리 사회에서 재난보도준칙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난보도의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인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대책이 발표되곤 하지만 임시방편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건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재난보도준칙이나 재난방송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재난보도와 관련된 매뉴얼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일까? 도대체 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재현될 뿐이다.

재난보도준칙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언론인은 준칙의 성패는 현장 기자나 회사가 아니라 편집국, 보도국 간부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에 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9)</sup> 그는 본사 데스크는 현장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준칙 제9조),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해서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준칙 제10조)는 두 가지만 지켜도 문제는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기자가 낙종에 대한 불안감과 밋밋한 기사 내용에 대한 초조감을 떨쳐내고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간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오랜 세월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보여 공감이가 가는 내용이다. 하지만 준칙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언론사 간부들의 공격 책임의식이나 저널리즘 윤리의 부재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과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뉴스 유통과 소비 구조가 언론사 내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먼저 속보를 내는 언론사 뉴스가 수많은 조회 수를 선점하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구조이다 보니,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나 피해자 중심의 보도는 무시되기 십상이다. 이에 언론사가 속보 경쟁을 통해 클릭 전쟁을 치르는 인터넷 회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릭 수가 포털의 “많이 본 기사”의 순위를 결정하고, 언론사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재난 발생 시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정보나 통계가 아닌 개인적 경험과 목격 내용이 여과 없이 시청자

8) 이흥천 (2016), 피해 보도 대신 이재민 위한 정보 전달에 힘 써, <신문과 방송>, 11월호.


9) 심규선 (2014), '기레기' 오명 벗기, 편집·보도국 간부 손에 달려, <신문과 방송>, 10월호.

들에게 전달되고,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주기도 한다.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정보를 검증해야 할 언론의 책무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언론사의 자율적인 보도 매뉴얼 준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언론의 사후적 책임을 묻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법조계 패널은 “언론은 정확성보다 속보성, 객관성보다 선정성에, 피해자 사연 부각에 관심을 갖는다”며 재난보도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준칙 위반 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재난 관련 법령에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고, 신속한 정정보도 관련 입법화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up>10)</sup> 또 2017년 말에는 자살보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1만 2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sup>11)</sup>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언론의 책임을 묻는 법률적, 제도적 조치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언론의 재난 관련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율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는 재난보도준칙은 말 그대로 취재와 보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침 또는 안내서일 뿐이다. 우리 언론의 재난보도준칙은 해외 주요 언론사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준칙이 데스크 위의 문서로만 존재하는지, 기자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지가 아닌가 싶다. 재난보도준칙이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살아 있는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준칙은 기준점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각 언론사 자체적인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하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판단과 행동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재난보도준칙에 입각하여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언론인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건,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실질적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건, 의식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서의 재난보도준칙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10) 정민경 (2019, 7, 18). 세월호 이후에도 안 지켜지는 보도준칙.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0>

11) 국민청원 게시판 (2017, 12, 18).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9169?page=5>